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0

2025년 3월 5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시민 독서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강서도서관 분관을 설치(’ 25.3월 예정)하고, 그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강서도서관 분관 명칭 및 소재지 조항 신설(안 제38조 및 [별표 7])

- 분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가양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22 (가양동)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90호로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강서도서관 분관 설치 예정(2025년 3월)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도서관 분관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안 제38조) 및 명칭과 위치(안 [별표 7])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부지 중 서진학교를 제외한 교사동 일부를 활용하여 강서도서관 분관을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서진학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의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협의의 결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1].

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7월에 자체투자심사, 2023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 등[2]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도서관 분관의 설립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3]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직편성권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행사하는 것인바[4],

사업 취지면이나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강서도서관 분관 층별 운영 현황[5]

구분	층별 현황
1층	그린라운지, 어르신강의실, 생태환경실, 스마트가든월
2층	가족자료실, 어린이자료실(유아실), 강의실(버들치), 시민커뮤니티실
3층	청소년자료실, 메이킹존, 생태그린존
4층	디지털미디어랩, Youth Zone(동아리방), 누리숲소극장, 강의실 2실(설앵초, 종다리)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제출시 동 분관의 개관일을 2025년 3월로 판단하여 이를 제안이유에 명시하였으나, 현재 해당 분관의 공정률은 56%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공사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과 강

1)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2019.7.26.). 서울서진학교 주민·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2) 동 분관 설립 사업비는 총 1,382,510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아님
3)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5)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024.10.). '강서도서관 가양관 설립 현황 보고' 자료.

서구청 사용승인검사 기간(1개월 이상) 소요를 이유로 당초 3월로 계획했던 개관일을 5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6].

그러나 이마저도 시공사와 계약기간이 조율되어야 정확한 공사기간 및 개관일이 확정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개관일을 근거로 동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인바, 가양도서관 분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사일정 및 개관일이 명확히 확정되고 난 이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강서도서관 분관 사전절차 이행 및 공정율 현황

시설명	자체투자 심사	공유재산심의회	공정율(%) ('24.12.9.기준)
강서도서관 가양 분관	'20.6.	'20.7.	56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사관(2024.10.). (가칭)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가양관 개관 운영 기본 계획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분관)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강서도서관 분관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도서관 분관의 명칭·위치(안 제38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가양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22 (가양동)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제38조(분관)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td></tr>
<tr><td>〈신 설〉</td><td>[별표7]
도서관 분관의 명칭·위치(제38조 관련)
<table><tr><th>분관명</th><th>소재지</th></tr><tr><td>서울특별시교육청 강서도서관 가양관</td><td>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22 (가양동)</td></tr></table></td></tr>
</table>